

동해시보건소 공고 제2025-35호

2025년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용자사업 공고

식품접객업소 및 제조·가공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용자 지원하여 노후 위생시설의 현대화로 식품위생수준의 선진화 유도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용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8. 1.

동 해 시 장



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5. 8월 ~ 2025. 12월
- 사업대상 :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식품위생 영업자
- 용자금액 : 총 2억 원(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)
- 용자조건 : 금리 연 2%(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)
* 단,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연 1.5%(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)
- 수행기관 : 「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」 위탁운영
- 업종별 용자한도액

㉠ 식품제조·가공업소 : 업소 당 7천만 원 이하

㉡ 식품접객업소: 업소 당 최대 5천만원 이하

- 으뜸음식점: 업소 당 5천만 원 이하
- 일반음식점: 업소 당 4천만 원 이하
- 휴게음식점: 업소 당 1천만 원 이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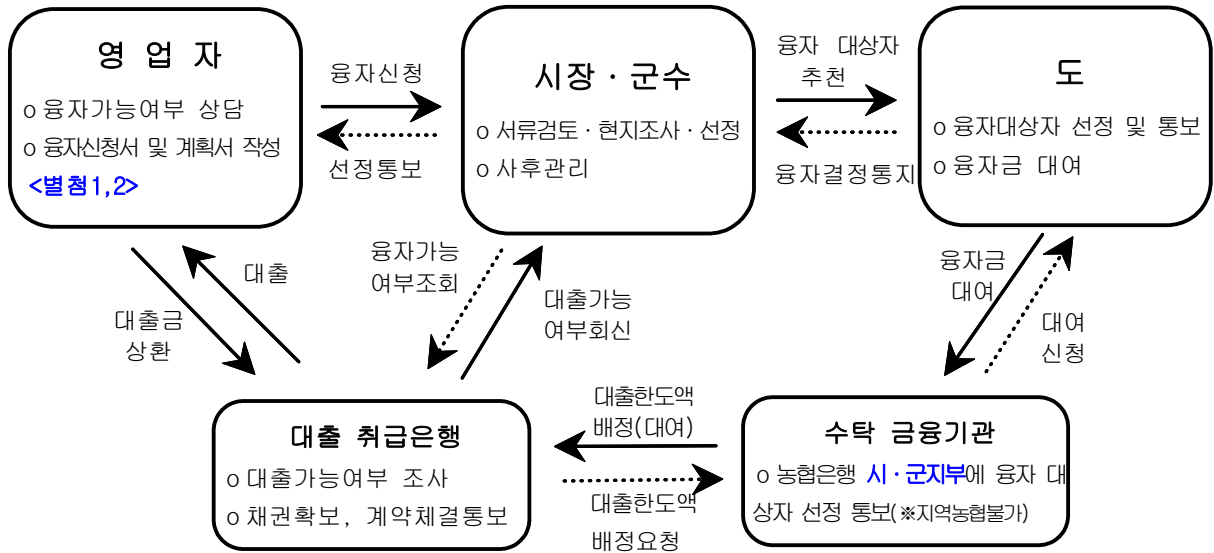
※ 화장실 시설개선은 용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 원 이내 추가 용자

㉢ 기타 식품위생업소*(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등) : 업소 당 1천만 원 이하

2. 세부 추진계획

1 선정방법

가. 선정절차



나. 용자대상 및 내용

- 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」 규정에 의한 도내 영업자 중 시장·군수의 영업허가(신고)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

1) 식품제조·가공업소

-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, 개·보수
-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·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등

2) 식품접객업소 등

-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및 개·보수
-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는 필요한 기계·기구 등의 설치
-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
-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

다. 용자추천 제외대상

- 휴폐업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
- 용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용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
- 용자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기간 내 시설개선을 미이행 한 업소

2 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(3개 분야 7개 항목)

1) 식품제조·가공업소

가) 기본평가(50점)

- ① 영업경력(허가(신고)일 기준 ⇒ 명의변경의 경우 변경일부터 적용) : 20점
- 5년 이상(20점), 3년 이상(10점), 2년 이상(5점), 2년 미만(0점)
- ②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(최근 2년간) : 15점
- 행정처분 없음(15점), 시정·시설개수(10점), 품목(류)정지 이상(0점)
- ③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용자사업자 선정(신청일 기준) : 15점
- 용자선정 경력 없음(15점), 5년 이내 용자선정 경력 있음(0점)

나) 서류평가(30점) ※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토대로 배점 평가

① 시설개선 필요성 : 20점

- 매우 높음(20점), 높음(10점), 보통(5점)

- ▶ 매우 높음 :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작업장 및 저장시설 등을 개·보수
- ▶ 높음 : 식품 제조·가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·설비 등을 개선
- ▶ 보통 : 기타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

② 추진내용의 타당성 : 10점

- 매우 우수(10점), 우수(6점), 보통(3점)
- 사업계획서에 항목별 개선내용 및 세부일정, 기대효과, 개선 후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내용 등 기재여부 확인(개선 전 사진 포함)

다) 기 타(20점)

① 사업계획에 영업장내 손 씻기 세면기 설치 : 10점

- 설치(10점), 미설치(0점)

※ 기 설치 영업장의 경우 현장 확인 후 배점여부 적용

② 경영상태(신청일 기준) : 10점

- 3년 이상 흑자(10점), 2년 이상 흑자(5점), 1년 이상 흑자(3점), 해당없음(0점)

2) 식품접객업소

가) 기본평가(60점)

① 영업경력(허가(신고)일 기준 ⇒ 명의변경의 경우 변경일부터 적용) : 15점

- 5년 이상(15점), 3년 이상(10점), 2년 이상(5점), 2년 미만(0점)

②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(최근 2년간) : 15점

- 행정처분 없음(15점), 시정·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경력 있음(0점)

③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용자사업자 선정(신청일 기준) : 15점

- 용자선정 경력 없음(15점), 5년 이내 용자선정 경력 있음(0점)

④ 식품접객업 우수업소 지정 : 15점

- 으뜸음식점 지정업소(15점),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(10점), 기타 시군 자체 우수 지정업소(5점)

나) 서류평가(30점) ※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토대로 배점 평가

① 시설개선 필요성 : 20점

- 매우 높음(20점), 높음(10점), 보통(5점)

- ▶ 매우 높음 :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주방, 객장 등을 개·보수
- ▶ 높음 : 음식조리, 원재료 보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, 설비 등을 개선
- ▶ 보통 : 기타 부대시설 및 기구 등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

② 추진내용의 타당성 : 10점

- 매우 우수(10점), 우수(6점), 보통(3점)
- 사업계획서에 항목별 개선내용 및 세부일정, 기대효과, 개선 후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내용 등 기재여부 확인(개선 전 사진 포함)

다) 기 타(10점)

① 영업장내 식중독예방차원 손 씻는 시설 설치 : 10점

- 설치 또는 사업계획에 포함(10점), 미설치(0점)

※ 가 점(최대 3점)

① 음식문화개선 추진 이행 우수업소(실천 건별 1점)

- 좋은 식단 실천 이행업소, 나트륨 줄이기 지정 음식점, 남은 음식 포장 실천 음식점 등

3) 기타 식품위생업소

가) 기본평가(50점)

① 영업경력(허가(신고)일 기준 ⇒ 명의변경의 경우 변경일부터 적용) : 20점

- 5년 이상(20점), 3년 이상(10점), 2년 이상(5점), 2년 미만(0점)

②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(최근 2년간) : 15점

- 행정처분 없음(15점), 시정·시설개수(10점), 품목(류)정지 이상(0점)

③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용자사업자 선정(신청일 기준) : 15점

- 용자선정 경력 없음(15점), 5년 이내 용자선정 경력 있음(0점)

나) 서류평가(30점) ※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토대로 배점 평가

① 시설개선 필요성 : 20점

- 매우 높음(20점), 높음(10점), 보통(5점)

- 매우 높음 :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및 작업장 등을 개·보수
- 높 음 : 식품판매, 보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, 설비 등을 개선
- 보 통 : 기타 부대시설 및 기구 등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

② 추진내용의 타당성 : 10점

- 매우 우수(10점), 우수(6점), 보통(3점)
- 사업계획서에 항목별 개선내용 및 세부일정, 기대효과, 개선 후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내용 등 기재여부 확인(개선 전 사진 포함)

다) 기 타(20점)

① 사업계획에 영업장내 손 씻기 세면기 설치 : 10점

- 설치(10점), 미설치(0점)

※ 기 설치 영업장의 경우 현장 확인 후 배점여부 적용

② 경영상태(신청일 기준) : 10점

- 3년 이상 흑자(10점), 2년 이상 흑자(5점), 1년 이상 흑자(3점), 해당없음(0점)

③ 사업수행 및 관리

가. 사업수행

○ (사·군)

- 용자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용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용자대상 우선순위 확정
- 영업시설 개선 전·후의 사진을 촬영, 공사계약서,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시 현지 확인 및 보고
- 용자 중요사항(시설개선내용, 사업자, 용자금액 증가 등)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후 변경허가 조치
- 화장실 개선 및 손 씻는 시설 설치를 제외한 시설개선 내용 변경, 용자금 대출계약 체결기한 연장 승인 등 경미사항은 시장·군수의 승인을 받음

➢ 단, 용자취급 금융기관 통보를 위해 **변경승인 내역은 즉시 도에 보고**

- 용자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매분기 1회 이상

확인, 추진상황보고서를 분기종료 후 익월 5일까지 제출

- 용자대상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[별첨3] 사업완료신고서를 시·군 제출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

- (용자취급기관) 자체 여신규정 및 식품진흥기금 용자업무 위탁관리 약정서에 따라 대출 실행

나. 사후관리

○ (시·군)

-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내용 임의변경 여부, 용자금 타 용도 사용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지도·감독
- 용자업소 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업소는 수탁금융기관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즉시 도에 보고

○ (시·군 및 용자취급기관)

- 용자선정 사업자가 담보능력 부족 등 기한 내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다른 영업자가 용자 받을 수 있도록 용자사업자 변경 또는 선정 취소 승인신청

다. 용자금의 반환

- 용자금을 시설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용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 된 경우

[별첨 1]

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

① 대표자		② 생년월일			
③ 업소명		④ 전화번호			
⑤ 소재지		⑥ 사업자등록번호			
⑦ 용자신청금액	천원				
⑧ 대상업종	식품제조가공업,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기타()				
영 업 현 황					
식품 접 객 업	업소규모	m ²	제 조 가 공 업	업체규모	m ²
	월 평균 매출액	천원		연간매출액	천원
	영업장 소유구분	자가, 전세, 기타		영업장 소유구분	자가, 전세, 기타
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.					
2025년 월 일					
신청인			(서명 또는 날인)		
동해시장 귀하					
구비서류					
1.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					

[별첨 2]

영업시설개선 계획서				
시설현황 및 개선계획서	① 영업장 총면적	m ²		
	② 개선계획내용	<p>※ 개선 필요성, 항목별 개선내용, 추진일정, 기대효과 등 (개선 전 사진 포함)</p> <p>붙임 : 시설 개선 전 사진 1부. 사진필수 첨부</p>		
자금용자 신청내역	③ 실(총) 소요금액	④ 용자신청금액	⑤ 비율(④/③)	⑥ 용자금상환계획
	천원	천원	%	